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7. 20 선고 2017나202228(본소), 2017나202235(반소) 판결
[원상회복가액 청구의 소 · 매매대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7. 20 선고 2017나202228(본소), 2017나202235(반소) 판결
의정부지방법원 2017. 1. 24 선고 2015가단126060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17. 7. 6.

판결 선고 2017. 7. 20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. 1. 24. 선고 2015가단126060(본소), 2016가단111393(반소)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에게 112,440,6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2,440,6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최종한

판사이유영

판사구자광